

# 법무연수원 간호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법무연수원에서는 간호서기(8급)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3년 12월 19일

법무연수원장

## 1. 채용 개요

채용예정직급	채용인원	담당직무내용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간호서기	1명	보건·의무 업무, 행정업무지원 등	법무연수원 교정훈련과 (충청북도 진천군)

## 2.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항 제2호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1항 제1호 및 제4항

### 3. 응시자격[최종시험(면접) 예정일('24 1 18.) 기준 아래 사항 전부 해당자

#### 가. 응시요건[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및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6. 12. 31. 이전 출생자)이면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 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 지역(거주지) 및 학력 : 제한없음

나. 응시요건[필수요건]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면허정지 또는 취소, 면허정지 또는 취소 예정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의료법」 제25조 및 제66조에 따라 ‘면허신고증’ 제출 필수
- 면허증 소지는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2024. 1. 18.) 기준으로 유효한 국내 면허증에 한함

다. 우대요건(적극적 서류전형 시에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12. 29.) 기준으로 인정)

○ 직무관련 자격증

- 직무관련 자격증은 국내면허증에 한하고 상위자격 1개 인정, 등급별 차등배점, **응시요건으로 제출한 자격증 제외**

	직무관련 대상 자격증
A등급	전문간호사, 보건교육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사회복지사 1급, 정신보건간호사 1급, 수의사, 약사, 한의사
B등급	보건교육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정신보건간호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조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물리치료사
C등급	보건교육사 3급

※ 응급구조사의 경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발급 자격증에 한함

○ 통신·정보처리, 사무관리 자격증

- 국내면허증에 한하고 상위자격 1개 인정, 등급별 차등배점

	인정 자격증
A등급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B등급 (기사)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컴퓨터 활용 1급
C등급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제어
D등급 (기능사)	정보기기운영, 정보처리, 워드프로세서(종전1급), 컴퓨터 활용 2급

○ 관련분야 근무경력

-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 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의료기관에 한함(보건소 경력은 포함, 조산원 경력은 제외)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 **병원급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병원 나.치과병원 다.한방병원 라.요양병원 마.정신병원 바.종합병원

근무경력 인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분야 경력은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 담당업무(예시 : 간호업무, 정신질환자 간호업무 등)를 명시한 <b>경력(재직)증명서[별지 제12호]</b>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시 대표자 인(또는 직인)과 발급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li> </ul> </li> <li>◆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주당 40시간 기준)해서 경력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0시간 초과 시 주 40시간으로 간주</li> </ul> </li> </ul>

- ◆ 기관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아래 보완서류 필수 제출

- ※ 보완서류 : ① 업무내용 증명서류(예,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1종
- ② 폐업사실증명서
- ③ 소득금액증명서
- ④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 확인서

※ **경력이 불명확(대표자 직인, 근무기간, 담당업무 미기재)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라. 가산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12. 29.) 기준으로 인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보유자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2019. 1. 1. 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하며 3급 이상 소지시 등급에 따라 가산점 부여

## 4.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서류전형 시험위원은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1명(총 2명)으로 구성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응시 인원이 7명 이하인 경우(소극적 서류전형)
  - 「국가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5항에 따라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응시 인원이 7명 초과인 경우(적극적 서류전형)
  - 「국가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6항에 따라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을 평정요소별로 종합 서면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7명을 합격자로 결정
-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시험 위원은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1명(총 2명)으로 구성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 심층면접을 통해 공직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기준 :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 정 요 소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                   |               |
|-------------------|---------------|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 전형(서류전형, 면접전형)을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평가방식 :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업무관련 지식 등을 토대로 한 질의·응답
- 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시험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는 불합격 처리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5.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3.12.19.(화) ~ 12.29.(금)	'23.12.19.(화) ~ 12.29.(금)	'24.1.12.(금)	'24.1.18.(목)	'24.1.26.(금)

가. 원서접수 : 2023. 12. 19.(화) ~ 12. 29.(금), 10일간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예정) : 2024. 1. 12.(금)

- 법무연수원 홈페이지(www.i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에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다. 면접시험일(예정) : 2024. 1. 18.(목)

- 면접일시,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예정

라. 최종 합격자 발표(예정) : 2024. 1. 26.(금)

- 법무연수원 홈페이지(www.ioj.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에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최초 공고 매체에 동일하게 게재

※ 최종합격자는 임용결격사유 확인 등을 거친 후 임용(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

## 6. 임용예정일, 신분, 보수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4. 2. 1.(목)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국가공무원법』 등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따름

##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가. 응시원서 교부

- 법무연수원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 본 공고문의 붙임자료 중 「응시원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나. 접수기간 : 2023. 12. 19.(화) ~ 12. 29.(금) (10일간)

### 다.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응시자는 제출서류 일체를 접수장소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원서 접수장소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인정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 접수번호(응시번호)는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
  - ※ 정부전자수입인지는 접수처(법무연수원)에서는 발급하지 않으므로, 전자수입인지사이트([www.e-revenuestamp.or.kr](http://www.e-revenuestamp.or.kr)),우체국 등을 통해 발급

### 라. 접수장소

- 방문접수 :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본관동 3층 총무과
  - ※ 방문 접수시간 : 09:00 ~ 18:00 (중식시간 12:00 ~ 13:00 제외)
- 등기우편접수 : (27873) 충북 진천군 덕산읍 교연로 780 법무연수원 총무과(인사담당)
  - ※ 봉투에 “간호서기 경력경쟁채용 응시원서 재증” 표기



## 8.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접수 시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 제출</li> <li>○ 응시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li> </ul> </li> <li>※ 수수료면제(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li> </ul>
2. 이력서 1부(별지서식 제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 제출</li> <li>○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li> </ul>
3.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 제출</li> <li>○ A4 2매 이내로 작성</li> </ul>
4.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 제출</li> <li>○ A4 3매 이내로 작성</li> </ul>
5.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1부 (별지서식 제6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 제출</li> <li>○ 자필서명 필수</li> </ul>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 제출</li> <li>○ 자필서명 필수</li> </ul>
7.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 서) 1부 (별지서식 제8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 제출</li> </ul>
8. 결격사유 확인서 1부 (별지서식 제9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 제출</li> <li>○ 자필서명 필수</li> </ul>
9. 공정채용 확인서 1부 (별지서식 제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 제출</li> <li>○ 자필서명 필수</li> </ul>
10.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지서식 제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 제출</li> <li>○ 자필서명 필수</li> </ul>
1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 제출</li> <li>※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시험위원 위촉 시 제척·기 피 용으로만 사용하며 시험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li> </ul>
12. 주민등록 초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li> </ul>
13. 응시자격요건 면허증 및 면허 신고증 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 제출</li> <li>※ 「의료법」 제25조 및 제66조에 따라 면허신고증 필수 제출</li> </ul>

<p>14. 우대사항 관련 자격증 사본 1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자에 한함</li> <li>○ 발급년월일 및 자격증 번호가 선명하게 나온 사본</li> <li>○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실이 있을 경우     갱신 또는 재발급한 사본</li> <li>○ 유효기간이 명기되어 있는 구 자격증의 경우,     최신 자격증 갱신 사본</li> </ul>
<p>15. 경력증명서 1부(별지서식 제12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격증 취득 후 근무한 기관 경력</li> </ul> </li> <li>○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li> <li>○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li> <li>○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li> <li>○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li> </ul> </li> </ul>
<p>16. 가산요건 자격증 사본 1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3급이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자에 한함</li> <li>○ 2019. 1. 1.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한정</li> </ul>

## 9. 최종합격자 결정안내

- 합격자는 법무연수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유선) 통보
- 합격자 통보 후 신체검사, 신원조사 결과, 기타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10. 유의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채용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연수원 총무과 채용담당자(☎043-531-1542)

붙 임 각종 양식 1부. 끝.

2023. 12. 19.

법무연수원장

# 참 고

##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정훈련과

주요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연수원 교육생 및 직원 등에 대한 진료, 보건 업무 및 교육활동</li> <li>○ 의료기자재 및 의약품 관리 등 법무연수원 의무실 운영</li> <li>○ 감염병 관리 및 보건행정에 관한 업무 등 수행</li> <li>○ 기타 행정 업무 등 부가 업무 등 수행</li> </ul>
------	--

필요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공통역량)</b>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li> <li>○ <b>(직렬별 역량)</b>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능력, 종합적 판단 및 정책 결정 능력</li> <li>○ <b>(직급별 역량)</b> 상황인식, 판단력,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의사소통</li> </ul>
------	--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호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li> <li>○ 의료 관련 법령 및 지식</li> <li>○ 전염성 질환에 대한 지식</li> </ul>
------	--

응시 자격 요건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li> <li>※응시자격 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li> </ul>
	자격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 1개 인정)</li> <li>○ 통신·정보처리, 사무관리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 1개 인정)</li> </ul>
우대요건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시요건 면허증 취득 후 의료기관*에서의 근무경력</li> <li>○ 경력에 따라 차등 적용</li> <li>*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 의료기관 가.병원, 나.치과병원, 다.한방병원, 라.요양병원, 마.정신병원, 바.종합병원</li> </ul>
	가산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보유자 (2017. 1. 1. 이후 실시된 시험)</li> </ul>

<별지 1호>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성 명	임용예정기관	응시직급
	법무연수원	간호서기

### ■ 작성목록표

\* 내용을 작성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유무 란에 "O" 표시

\* 제출서류의 작성자 성명은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

구분	목 록	제출유무
<b>공통사항</b> (필수제출)	1. 응시원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2.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3.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4.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5.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제7호 서식)	
	7.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8. 결격사유 확인 서약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9. 공정채용 확인서 1부(별지 제10호 서식)	
	10.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11호 서식)	
	1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시험위원 위촉 시 제착기피 확인용으로만 사용하며 시험위원에게 제 공되지 않음	
	12.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 복무확인서 1부 추가 제출	
	13. 응시자격요건 면허증 및 면허신고증 사본 1부 ※ 「의료법」 제25조 및 제66조에 따라 면허신고증 필수 제출	
<b>증빙서류</b>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4.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15. 통신·정보처리, 사무관리 자격증 사본 각 1부	
	16. 경력증명서(별지 제12호 서식)	
	17.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1급~3급) 1부	

<별지 2호>

## 응 시 원 서

본인은 법무연수원 일반직공무원(간호서기) 경력경쟁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월     일

법무연수원장                 귀하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성명	(한글) _____ (서명)
응시직급 (응시분야)	간호서기(간호)		(한자)
생년월일	년    월    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input type="checkbox"/> 해     당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주 소	(Ⓞ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5천원)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 응 시 표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응시직급 (응시분야)	간호서기(간호)
성명	(한글) _____	(한자) _____	
2023년    월    일 법무연수원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3.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고  
서명란에 본인이 서명함
4.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5.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전자수입인지 가능)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3호>

## 이 력 서

### 가. 인적사항

응시번호	* 기재 안 함	성 명		응시직급	간호서기
------	----------	-----	--	------	------

### 나. 응시자격

면 허 증	면허증명	면허증 취득(예정)일	발급(취득) 기관
	간호사 면허증		

### 다. 우대요건 (증명사항이 많을 때는 별지로 제출)

우대사항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번호	자격증취득일	발급처	
경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최신순으로) 예)○○병원	예) 2018.01.01.~2023.8.13.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6.7..1.~16.12.31. (질병휴직 6월)	예)간호사	예)간호	전임/비전임 (주00시간 근무)

### 라. 가산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발급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시행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작성자 :      자필기재      (서명)

## 이력서 작성요령

◎ 이력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자 본인에 해당하는 내용에 한하여 작성(응시번호는 미기재)
2. **성명·간호사 면허 관련사항**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3. 필요에 따라 행을 늘려 작성 가능

(※기재 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 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2장 이내로 작성 가능)

4. 우대요건 및 가산점 중 자격증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하며, 자격증명, 취득(예정)일,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 분야 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5. 우대요건 중 경력사항

- 담당 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 형태)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 이직 등으로 경력 요건 미충족시 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합격 취소될 수 있음
- 근무 형태는 주당 근무시간을 기재, 주당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한달 평균 주당 근무시간을 기재

6. 자필 또는 워드로 작성 가능하나, **작성자 성명 및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

7.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8. 응시자 부주의로 잘못 기재되거나 표시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별지 제4호>

## 자 기 소 개 서

응시 번호	* 기재 안 함	응시 분야	간호서기	성 명	
----------	----------	----------	------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요망
- ※ 자기소개서 마지막 페이지에 날짜, 성명 기재 후 서명요망

※ 글씨크기 13, 줄간격 160%, 용지 좌·우·상·하 여백은 각각 20mm,  
머리말·꼬리말은 각각 10mm로 작성

2023. . .

작성자 ○ ○ ○ (서명)

<별지 제5호>

## 직 무 수 행 계 획 서

응시 번호	* 기재 안 함	응시 분야	간호서기	성 명	
----------	----------	----------	------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분량은 요약서 A4 1매 + A4용지 5매(총 6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요망

※ 글씨크기 13, 줄간격 160%, 용지 좌·우·상·하 여백은 각각 20mm, 머리말·꼬리말은 각각 10mm로 작성

2023. . .

작성자 ○ ○ ○ (서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4.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b>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b>	공무원 채용 관리	<b>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b>	<b>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b>
<b>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b>	공무원 채용 관리	<b>학위,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b>	<b>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b>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8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b>1.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b>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 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b>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b>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b>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b>		
<b>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b>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b>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b>		
<b>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b>		
<b>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b>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b>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b>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b>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b>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 결격사유 확인 서약서

본인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도 해당하지 않으며 만약 해당사항이 발견될 시 임용취소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 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23. . .

서약자 : (서명)

**법무연수원장 귀하**





<별지 제12호>

## 경력[재직]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증 명 사 항	재    직    기    간	소속 및 직위(급)	담당업무내용	상근여부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지원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상근 또는 비상근 여부 반드시 기재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관(업체)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발 급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 \* 상근 : 1일 8시간, 주간 40시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의미함
- \*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평균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명시
- \* 담당업무 내용과 근무기간, 근무경력(상근/시간제근무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 **기관 주소 및 전화번호, 대표자, 발급자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 첨부된 경력증명서 작성요령을 반드시 참고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 작성요령

- ▲ 담당업무내용에는 채용 분야(간호)와의 업무관련성이 잘 나타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 ▲ 근무경력은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 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 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의료기관에서의 경력으로 한함(보건소 경력은 포함, 조산원 경력은 제외)
  
- ▲ 상근여부 및 근무형태(종일제, 시간제, 격일제 등) 반드시 기재
  - ※ 상근 : 주40시간 근무자, 비상근 : 주5일 미만 근무자, 시간제 : 주40시간 미만 근무자
  - ※ 비상근과 시간제는 주당 근무시간 표시
  
- ▲ 근무기간(연월일까지 기재), 담당업무내용, 발급기관(업체)명, 직인, 발급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등을 명시
  - ※ 발급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 ※ 기관 자체적인 서식에 따라 작성가능하나, 안내된 기재사항은 반드시 포함
  
- ▲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 미기재 및 모호·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응시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별지 제13호>

※ 응시서류 반환 청구 시 작성

(필수 제출 서류 아님, 채용절차 종료 이후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 요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법무연수원장 귀하